

의안번호	2210610
의 퇴 인	장동혁의원
회 답 일	2025. 7. 22.
추 계 번호	25B3019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3조의2 (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역할) 신설	공사는 재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시, 광역시·도 및 특별 자치도에 각각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	안 제54조(업무)	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함(제1항) 11. <u>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지역방송국 설치 및 운영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</u>	의무규정
		공사는 제1항제1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음(제2항 신설) 1. 보유자산의 효율적 활용 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및 보조금 3. 공익적 목적의 기부금 및 후원금 4. 방송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수익 5.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공프로젝트 및 기금 6.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	재량규정
		국가는 제1항제5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3조의2 (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역할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	안 제54조(업무)	

2. 상세 사유

- 특별시, 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각 한 개 이상의 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국 설치·운영 등(안 제43조의2 및 안 제54조)
- 현행법¹⁾은 한국방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는 9개의 지역방송총국 및 9개의 지역국 등 총 18개의 지역방송국을 설치·운영하고 있음

[표 1] 한국방송공사(KBS)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위치

(단위: 개)

구 분		방송총국	지역국	비 고
서울특별시	—	—	—	※본사
부산광역시	1	1(부산)	—	
대구광역시	1	1(대구)	—	
인천광역시	—	—	—	
광주광역시	1	1(광주)	—	
대전광역시	1	1(대전)	—	
울산광역시	1	—	1(울산)	
세종특별자치시	—	—	—	
경기도	—	—	—	※경인방송센터
강원도	3	1(춘천)	2(강릉, 원주)	
충청북도	2	1(청주)	1(충주)	
충청남도	—	—	—	
전라북도	1	1(전주)	—	
전라남도	2	—	2(목포, 순천)	
경상북도	2	—	2(안동, 포항)	
경상남도	2	1(창원)	1(진주)	
제주특별자치도	1	1(제주)	—	
합 계	18	9	9	

자료: 한국방송공사

1) 제43조(설치등) ④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.

- 개정안에 따라 특별시, 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각 한 개 이상의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, 충청남도 등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방송국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한 필요 재원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방송국의 기능(보도, 제작 등) 및 운영 방향에 따른 인력 투입 및 방송장비 구축 계획, 청사 규모 및 확보 방식(신축·임차 등)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역시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